

2019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경기도소방학교장

1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부서)	선발예정 인원	담당업무	비 고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	3명	청사방호 및 주요시설 경비 (교대근무)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장년)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 4. 16.까지 적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이 2019. 4. 17.부터 적용됩니다.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 4. 17.시행)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19. 4. 17. 시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나. 거주지 제한 : 2019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라. 자격사항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의 조건을 갖춘 사람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응시자 자격사항 충족여부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확인 함.

3

시험방법

가. 채용시험 배점

구분	계	필기시험 (제1차)	서류전형 (제2차)	체력시험 (제3차)	면접시험 (제4차)	비고
배점	100	75	적·부	15	10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제1차 : 필기시험 (75%) / 2과목(일반상식, 민간경비론)

※ 시험시간(문항수) : 40분(1과목당 20문항 4지택1)

※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3배수에 해당하는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다. 제2차 : 서류전형 (적·부)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서류전형 불
합격자는 개별 통보

※ 직무관련 경력(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임용된 경력) 및 자격증(경비지도사) 소지자 우대

라. 제3차 : 체력시험 (15%) ※ 남·여 구분 없음

1) 종목별 배점(3종목 15점 만점)

종 목	측 정 점 수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악력 (kg)	34.0 이하	34.1~ 36.8	36.9~ 39.6	39.7~ 42.4	42.5~ 45.2	45.3~ 49.2	49.3~ 52.4	52.5~ 55.4	55.5~ 58.0	58.1 이상	
윗몸일으 키기(회/분)	19 이하	20~ 25	26~ 31	32~ 37	38~ 41	42~ 45	46~ 48	49~ 50	51~ 53	54 이상	
측정점수	1.0	1.4	1.8	2.2	2.6	3.0	3.4	3.8	4.2	4.6	5.0
왕복 오래 달리기(회)	24 이하	25 ~ 30	31 ~ 35	36 ~ 40	41 ~ 45	46 ~ 49	50 ~ 53	54 ~ 57	58 ~ 60	61 ~ 63	64 ~ 65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별표 7) 규정 준용

2) 체력시험 합격자 결정 : 전 종목 총점(15점)의 50%(7.5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마. 제4차 : 면접시험 (10%)

1) (합격자 결정)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
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5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2) 평가요소별 점수

평가요소 (5개 분야 50점)	수		우		양		가
	A ⁺	A ⁰	B ⁺	B ⁰	C ⁺	C ⁰	D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10점)	10	8.5	7	5.5	4	2.5	1
② 창의력 · 의지력, 발전가능성(10점)	10	8.5	7	5.5	4	2.5	1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 · 논리성(10점)	10	8.5	7	5.5	4	2.5	1
④ 전문지식 · 기술과 응용능력(10점)	10	8.5	7	5.5	4	2.5	1
⑤ 예의 · 품행 · 성실성 및 봉사정신(10점)	10	8.5	7	5.5	4	2.5	1

바. 최종 합격자 결정

- 1) 최종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성적(75%), 체력시험(15%), 면접시험 성적(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제1차 필기시험성적이 우수한 사람 ②제2차 체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을 결정함.
- 3) 최종 합격한 사람이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 순위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일자	장소
2019. 4. 15.(월) 09:00 ~ 4. 17.(수)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필기시험	5. 10.(금)	5. 18.(토)	5. 27.(월)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s://119.gg.go.kr/academy
	체력시험	5. 27.(월)	5. 31.(금) 10:00	5. 31.(금)	
	면접시험	5. 31.(금)	6. 5.(수) 10:00	6. 7.(금)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9. 4. 15.(월) 09:00 ~ 4. 17.(수)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접수방법

- 1)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전에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서접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 - 0660)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2)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2)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 3.5cm × 4.5cm 기준
- 3)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아야하며 식별이 용이 하여야 합니다.
- 5) 응시표 출력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6

보수 및 복무

가. 보 수 :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참조

나. 복 무 : 「국가공무원법」,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경기도 공무원 및 청원경찰 관리규정」, 「경기도 직장방호 규정」 등 적용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시 또는 각종 서류의 제출 시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음과 상관없이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의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기도에서 자체 출제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의 일정 등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 중 필기시험에 관한 내용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5)으로, 그 이후 시험 및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 행정지원팀(☎ 031-329-0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이력서(서식) 1부.

2. 자기소개서(서식) 1부. 끝.

<별지서식 제1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청원경찰	성 명	
----------	-----------------	----------	------	-----	--

나. 응시 자격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서명)

※ 경력·자격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행추가 또는 별지이용 가능

※ 경력·자격 등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별지서식 제2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청원경찰	성 명	
----------	----------	----------	------	-----	--

2019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